



제418회국회(임시회)  
제11차 교육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온라인학교 설립 근거 마련〉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86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 목 차 】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7.

3. 회부연월일 : 2024. 9. 3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 과목에 대해 과목 이수 기준이 적용되어 학점 취득·누적으로 졸업하게 됨.

그런데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지역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어렵게 됨.

따라서 학생이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8절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의4 신설).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각종학교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8절에 “온라인학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제 60조 등).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학교는 “소속된 학교의 개설 과목 외에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며 “시간제수업<sup>1)</sup>”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임.

| 현행                                                                                                                                       | 개정안                                                                                                                  |
|------------------------------------------------------------------------------------------------------------------------------------------|----------------------------------------------------------------------------------------------------------------------|
| 제60조(각종학교) ① (생략)                                                                                                                        | 제60조(각종학교) ① (현행과 같음)                                                                                                |
|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br>-----<br>-----<br>-----.<br>-----<br>-----<br>-----<br>-----<br>-- 포함한다)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신설>                                                                                                                                     | 제60조의4(온라인학교) ① 소속된 학교의 개설 과목 외에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정보통신 매체                                                |

|                              |                                                                                                                                                                                                        |
|------------------------------|--------------------------------------------------------------------------------------------------------------------------------------------------------------------------------------------------------|
|                              | <p><u>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각종학교(이하 “온라인학교”라 한다)로서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31조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u>②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급 편성,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u>제60조의4 ~ 제60조의11 (생략)</u> | <u>제60조의5 ~ 제60조의12 (현행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1까지와 같음)</u>                                                                                                                                                    |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는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sup>2)</sup>, 2022년 ‘(가칭) 온라인고교 신설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sup>3)</sup>가 설정됨에 따라 2023년 4개 교육청<sup>4)</sup>에서 처음 시범운영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에도 대전, 강원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1)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의 한 종류

2) 교육부,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추진계획(2022)」

3) (국정과제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

4) 대구, 인천, 광주, 경남

< 온라인학교 운영 현황('24.9월 기준) >

| 구분 | 교명          | 개교       | 교육과정('24) |                 |
|----|-------------|----------|-----------|-----------------|
| 대구 | 대구<br>온라인학교 | '23.9.1. | 1학기       | 52강좌(408명 수강)   |
|    |             |          | 2학기       | 51강좌(480명 수강)   |
| 인천 | 인천<br>온라인학교 | '23.9.1. | 1학기       | 84강좌(1,438명 수강) |
|    |             |          | 2학기       | 91강좌(1,504명 수강) |
| 광주 | 빛고을<br>온학교  | '23.9.1. | 1학기       | 55강좌(601명 수강)   |
|    |             |          | 2학기       | 47강좌(528명 수강)   |
| 경남 | 경남<br>온라인학교 | '23.3.1. | 1학기       | 47강좌(321명 수강)   |
|    |             |          | 2학기       | 40강좌(247명 수강)   |
| 대전 | 대전<br>온라인학교 | '24.9.1. | 1학기       | -               |
|    |             |          | 2학기       | 26강좌(190명 수강)   |
| 강원 | 강원<br>온라인학교 | '24.9.1. | 1학기       | -               |
|    |             |          | 2학기       | 34강좌(159명 수강)   |
| 충북 | 충북<br>온라인학교 | '24.9.1. | 1학기       | -               |
|    |             |          | 2학기       | 22강좌(175명 수강)   |
| 전북 | 전북<br>온라인학교 | '24.3.1. | 1학기       | 21강좌(206명 수강)   |
|    |             |          | 2학기       | 36강좌(414명 수강)   |
| 제주 | 제주<br>온라인학교 | '24.9.1. | 1학기       | -               |
|    |             |          | 2학기       | 24강좌(340명 수강)   |
| 합계 | 9개교         |          | 1학기       | 259강좌(2,974명)   |
|    |             |          | 2학기       | 371강좌(4,037명)   |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 운영의 배경을 살펴보면, 2022년 고교학점제가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 학교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차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그 대안으로써 온라인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음.

즉, 온라인학교는 개별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고교학점제가 제도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 것임. 나아가, 온라인학교를 통해 소인수과목과 신기술 분야 과목 등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운영하거나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 또한 있음.

이에 개정안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온라인 학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바, 효과적인 고교학점제 안착과 지역간 교육격차 극복 등의 측면에서 온라인학교가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온라인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31조제2항·3항, 제3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적용이 배제되는 학교의 설립기준(제4조), 학칙(제8조), 학급 편성(제24조) 등 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참고로, 개정안 규정에 따라 온라인학교에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                                                                                                                                    |
|-----------------------|------------------------------------------------------------------------------------------------------------------------------------|
| 제4조 (학교의 설립)          |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제8조 (학교 규칙)           |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4조 (수업 등)           | 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br>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교육부는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생 없이 지역 고교생에게 시간제수업을 개방·운영하고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는 학교로, 일반 학교와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86 |